

군산시 공고 제2019-33호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사무기구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 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2조제1호)

※ 필요한 경우 규칙안 전문을 첨부하거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감사담당관(☎063-454-2113, FAX 454-2109)

○ 전자우편 : cjs081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063-454-2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동**”을 “**읍면동,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b>읍면동</b></p> <p>2.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 ----- ----- ----- -----.</p> <p>1. ----- <b>읍면동, 의회사무국</b></p> <p>2.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19-62호

## 공 고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1. 입법(제정)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안 제3조)

-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관련 시책 수립 시 시민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안 제7조)

-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안 제8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등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2월 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 063-454-4303, FAX : 063-454-4299)
- 전자우편 : leonian035@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전화: 454-4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공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또는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군산시 경관위원회가 심의·자문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산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9-92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가.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 필요성 대두

나. 골목상권 종합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상권 조성

다.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흔들림없이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소 지역상인 육성

### 2.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 목적 및 기본 방향, 용어 정의 (제1조부터 제3조)

나. 적용법위 및 법인 설립성격, 재단 사업 (제4조부터 제6조)

다. 기본재산 조성근거 및 정관에 기재할 내용 (제7조부터 제8조)

라. 임원과 대표이사,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운영 (제9조부터 제12조)

마. 직원 임명과 운영재원, 수익사업 수행근거 (제13조부터 제15조)

바.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제16조부터 제18조)

사.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 (제19조부터 제24조)

아.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재단사업 확인·검사 근거(제25조부터 제26조)

자. 공무원의 파견 근거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제27조부터 제29조)

### 3. 의견제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454-2704, FAX : 063-454-26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전화 063-454-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참고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

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 상임이사는 시의 경제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타운매니저와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④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인

2. 도시·건축·디자인·경영·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확인·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9-95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단체협약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 1)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저연차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하계휴가 및 경미한 병원진료에 필요한 연가 사용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

##### 2) 연가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 3) 연가 당겨쓰기 신설(안 제15조의2)

- 탄력적인 연가사용을 위하여,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를 규정

##### 4)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권장 신설(안 제15조의3)



-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직원이 당해연도의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시장이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5) 연가일수공제 제도 개선(안 제18조제2항)

- 연가일수 공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상향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형평성 확보

###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완화

#### 1) 육아시간 확대(안 제21조제4항)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

#### 2)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1조제4항)

- 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임신 전체 기간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3) 자녀돌봄휴가 확대(안 제21조제10항)

-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 확대

#### 4) 난임치료휴가 신설(안 제21조제11항)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 1일 휴가부여

####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 4)

-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5일→10일)

### 다. 기타 제도 개선

#### 1) 공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5호)

-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과, 「검역법」에 따

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공가 사유에 추가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제3항)

라. 2018년 단체협약 내용 반영

1)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21조제7항)

- 포상휴가 일수(3일→5일) 확대, 다만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함

2) 군 입영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2항)

-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휴가부여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총무계)
- 전화: 063)454-2234, FAX: 454-2229,
- 전자우편: rmc3p@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전화 063-454-22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제1항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다른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따르고,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 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⑥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5호 중 “때”를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 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제2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5”를 “10”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친절·공정) ①·② (생략)</p> <p>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6조(친절·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수행할 때 ----- ----- -----.</p>																																		
<p>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간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 <td>3일</td> </tr> <tr> <td>6개월 이상 1년 미만</td> <td>6일</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9일</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2일</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4일</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7일</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0일</td> </tr> <tr> <td>6년 이상</td> <td>21일</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4</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5</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7</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0</td> </tr> <tr> <td>6년 이상</td> <td>21</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p>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 ---- 따르고,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 -----.</p>																																		
<p>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p>	<p>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p>																																		



2. ~ 3.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

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생략)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 연도  
12개월 연가 일수

12월

-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⑥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략)

<신설>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공가)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

⑤·⑥ (생략)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2. (생략)

⑧·⑨ (생략)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5일 -----  
----- .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1.·2.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 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생 략)

<신 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생 략)	-
	-	-
출산	배우자	<u>5</u>
입양	-	-
사망	-	-
	-	-
	-	-
	-	-
	-	-
탈상	-	-

비고: (생략)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현행과	같음
	-	-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	-
사망	-	-
	-	-
	-	-
	-	-
	-	-
탈상	-	-

비고: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9-101호

# 공 고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 군 산 시 장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는 가맹점 불편 해소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행사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 (제11조)
- 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제13조)
- 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변경(제13조제5항 관련 별지1~2)

####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5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9949012@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과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전화 : 063-454-2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위 임 장 (※ 대리 신청시 작성)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인센티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등 포함)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대리 신청 시 위임자 도장 날인 (서명 불가)		

### □ 골목상권 이용실적

이용금액 (합계)	이용업소 상호명 (대표 가맹점만 기입)	※ 해당 사항에 V 표시	
		주소지가맹점	음식점가맹점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

### 영 수 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확인

(

읍·면·동

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유의 사항

1.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시 소유 시설물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시설물 이용내역

이용금액 (합계)	이용시설	이용내역	비고
			이용내역 예시) - 입장권 구입 - 수영 수강신청

 영수증

입장권이나 영수증 부착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 군 산 시 장 귀하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군산시 소유 시설물 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③ (생략) <u>&lt;신설&gt;</u>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⑥ (생략) <u>&lt;신설&gt;</u>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⑥(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산시 고시 제2019-1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86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명산동 21-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863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명산동 21-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863호선)사업

나. 명 칭 : 명산시장 소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sup>2</sup> )	
소로3-863	45m	6m	군산고10 (2018.1.12.)	45m	6m	273m <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명산	21-21	도	67.3	9.7		군산시			
2	군산	명산	21-27	대	70.6	70.6		군산시			
3	군산	명산	21-29	대	94	94		군산시			
4	군산	명산	21-31	대	18.8	18.8	군산시 월명동 14-3	정*배	익산시 갈산동 86-1	이*신	
									군산시 명산동 21-13	안*실	
										군산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군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239	박*관		
5	군산	명산	21-32	대	79.9	79.9		군산시			
계			5필지			273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명산	21-27	주택1	조적조 기와지붕	52.2	52.2		군산시			
				주택2	조적조 스레트지붕	11	11					
				창고	조적조 스레트지붕	2.04	2.04					
				화장실및 창고	조적조 슬라브지붕	6.72	6.72					
				가추		11.6	11.6					
				대문		1식	1식					
				우물		1식	1식					
				간판		1식	1식					
				진열대		2식	2식					
2	군산	명산	21-29	가추	목조 스레트	20.7	20.7		군산시			
				상가	블록 스레트	22.8	22.8					
				부속주택	블록 스레트	57	57					
3	군산	명산	21-31	주택	조적조 슬라브	33	33		미 상			
				대문		1식	1식					
5	군산	명산	21-32	주택1	조적조/ 강판지붕	48	48		군산시			
				주택2	조적조/ 슬라브지붕	26.6	26.6					
				주택3	조적조/ 강판지붕	19.14	19.14					
				화장실	조적조/ 슬라브지붕	8	8					
				가추	조적조/ 강판지붕	48.59	48.59					
				다용도실 2층	조적조/ 강판지붕	90.06	90.06					
				대문	철재	1식	1식					
				계단	콘크리트및 철재	1식	1식					

군산시 고시 제2019-2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155호(2016.12.9.)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 외 3개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지곡동 1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 외 3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소로1-25 1	10	190	군산고210 (‘96.6.1.)	10	110.2	1,189	신설
소로2-57 5	8	108	군산고210 (‘96.6.1.)	8	107.6	921	신설
중로1-17	20	380	군산고210 (‘96.6.1.)	10	190.1	1,665	도로확장 (10m→20m)
대로2-11	30	990	전북고111 (‘95.6.29.)	15	17.2	330	접속부
계					425.1	4,10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6. 12. 9. ~ 2018. 12. 31. → (변경) 2016. 12. 9 ~ 2019.

##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9-4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86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미룡동 83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864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미룡동 83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864호선)사업

나. 명 칭 : 나운3동 관여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sup>2</sup> )	
소로3-864	936m	6m	군산고37 (2018.3.16.)	936m	6m	6,831m <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건설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시군구	읍,면,동,리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선 외		성명	주소	권리명	권리의 종류
합계		나운3동				5,664	1,167	6,831				
1	군산시	미룡동	290-2	학	469,061	1,496	93	1,589	국(교육부)			
2	군산시	미룡동	795-1	도	11		2	2	진*천	나운동555-1우진아파트10동102호		
3	군산시	미룡동	795	대	406		3	3	진*천	나운동555-1우진아파트10동102호		
4	군산시	미룡동	793-2	도	324		12	12	이*서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충절로29번길502호(제일아파트)		
5	군산시	미룡동	834-1	도	14,263	834	177	1,011	국(국토교통부)			
6	군산시	미룡동	792	전	1,226	50	81	131	한*철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161나운동청솔아파트103동701호		
7	군산시	미룡동	산70	임	1,488	60	23	83	박*순	고양시일산구일산동1575중산마을501동501호		
8	군산시	미룡동	784	답	1,107	17	26	43	박*재 외 1인	나운동1187-2금호2차아파트다동404호		
9	군산시	미룡동	771	전	1,309	38	19	57	고*복	옥산면금성리101		
10	군산시	미룡동	770	전	2,810	25	13	38	문*권	신관리 388		
11	군산시	미룡동	769	전	760	19	12	31	김*우	신관동396-1		
12	군산시	신관동	429-8	도	7	7		7	군산시			
13	군산시	신관동	429-1	전	902	30	10	40	박*진	경기도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2로83.1005동701호(향남시범살구꽃마을대방노블랜드아파트)		
14	군산시	신관동	429-32	전	231	103	57	160	강*덕 외 1인	대전광역시유성구계룡로133.1층(봉명동)		
15	군산시	신관동	420-5	도	69	23	10	33	조*옥	군산시문화동916-29		
16	군산시	신관동	421-2	도	661	20	33	53	조*연	554		
17	군산시	신관동	941-1	도	18,083	778	106	884	국(국토교통부)			
18	군산시	신관동	424-1	전	231	149	63	212	이*월 외 1인	대전광역시중구수침로138,110동1201호(태평동, 유등마을아파트)		
19	군산시	신관동	424-5	전	202	148	41	189	정*복	대전광역시서구복수동로21-20,202동105호(복수동, 초록마을2단지)		
20	군산시	신관동	429-2	전	635	3	26	29	서*석 외 1인	경암동664-13		
21	군산시	신관동	424-6	전	264	118	54	172	이*선 외 3인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112번안길35,201호(탄방동)		
22	군산시	신관동	424-7	전	213	60	32	92	심*보	대전광역시유성구구즉로16,112동306호(송강동, 한마을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시군구	읍,면,동,리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선 외		성명	주소	권리명	권리의 종류
23	군산시	신관동	424-8	전	264	54	33	87	박*정 외 6인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1 순환로1137번길19.		
24	군산시	신관동	429-9	도	291	291		291	국(농림 축산식품부)			
25	군산시	신관동	424-9	전	331	42	37	79	김*정	경기도광명시밤알안로24 번길8-1(하안동)		
26	군산시	신관동	424-2	도	390	390		390	군산시			
27	군산시	신관동	424-10	전	331	36	28	64	안*심	경기도이천시중신로291 번길128,105동1101호(송정동,동양파라곤)		
28	군산시	신관동	424-11	전	331	28	30	58	라*울 외 1인	대전광역시중구계백로16 15번길34,115동1405호(유천동,현대아파트)		
29	군산시	신관동	424-3	전	264	17	26	43	강*덕	대전광역시유성구계룡로 133,1층(봉명동)		
30	군산시	신관동	424-4	전	264	21	23	44	김*분 외 1인	경기도성남시수정구모란 로78,504호(태평동)		
31	군산시	신관동	407-2	도	212	172	6	178	군산시			
32	군산시	신관동	407-1	대	1,179	32	41	73	노*환	전라북도군산시관여길13 7(신관동)		
33	군산시	신관동	407-3	도	24	3		3	노*식	금광동172삼성아파트7 동201호		
34	군산시	신관동	397-2	도	63	63		63	군산시			
35	군산시	신관동	397-1	전	1,018	53	32	85	신*구	전라북도군산시오룡2길8 -1(오룡동)		
36	군산시	신관동	396-1	대	334	13		13	김*우	울산군울산면덕신리337 동해필프사택3동108호		
37	군산시	신관동	396-2	도	7	7		7	군산시			
38	군산시	신관동	624-3	도	66	19	1	20	군산시			
39	군산시	신관동	392-1	대	340	9		9	조*자	전라북도군산시개사길27 0(신관동)		
40	군산시	신관동	625-1	전	106	26	5	31	조*자	전라북도군산시개사길27 0(신관동)		
41	군산시	신관동	625-4	도	23	23		23	장*수	625		
42	군산시	신관동	625-2	도	155	18	6	24	군산시			
43	군산시	신관동	625-5	도	496	160	6	166	군산시			
44	군산시	신관동	625-7	대	600	67		67	문*자	625		
45	군산시	신관동	625-3	대	660	142		142	서군산 농업협 동조합	군산시산북동2952		

##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시(군)	면(읍)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군산		미룡	290-2	소나무	-	2주	국(교육부)						
					금송	-	2주							
					잡목	-	3주							
					CCTV	-	1개							
					마을표지석	-	1개							
2	군산		미룡	834-1	컨테이너	-	24㎡	국(국토 교통부)						
					위험표지	-	1개							
3	군산		신관	392-1	창고	둘레 - 20.0m	18㎡	조*자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길 270(신관동)					스레트
4	군산		신관	396-2	사철나무	-	80주	군산시						
5	군산		신관	625-1	창고	둘레 - 50.0m	172㎡	조*자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길 270(신관동)					스레트

군산시 고시 제2019-7호

## 내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내초지구의 경계가 확정 되었기에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8일

1. 공고기간 : 2019. 1. 8. ~ 2019. 1. 22. (14일간)
2. 사업명 : 2017년 내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4. 사업기간 : 2017. 2. 24. ~ 2019. 1. 8.
5. 사업위치 : 군산시 내초동 1-3번지 일원
6. 지적확정 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서류의 열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 나. 열람기간 : 2019. 1. 8. ~ 2019. 1. 22. (14일간)
  - 다. 열람장소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454-4330)

지적확정조서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9-8호

## 군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269호(2018.12.14)로 군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11일

### 1. 군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조서

#### 가.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원당 지구	자연 취락지구	미룡동 604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8,74 5	전북고247 호 (‘98.5.16)	도시
변경	5	원당 지구	자연 취락지구	미룡동 604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9,13 3	전북고247 호 (‘98.5.16)	도시
신설	71	외사 지구	자연 취락지구	사정동 538-1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19 2		도시
신설	72	동상 지구	자연 취락지구	임피면 읍내리 46-3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0,68 3		도시

#### 나.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사유서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원당지구	• 취락지구 면적 변경 - 면적 : 68,745㎡ → 69,133㎡ (증) 388㎡	•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상 불합리 하게 결정된 취락지구 경계 조정
71	외사지구	• 취락지구 신설 - 면적 : 10,192㎡	• 취락지에 대한 정비 및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72	동상지구	• 취락지구 신설 - 면적 : 20,683㎡	• 취락지에 대한 정비 및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9-10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15일

### 1. 고시내용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사 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소룡2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붕괴	D	5,230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 예산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 이후 정비시행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군산시청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9년 1월 15일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협약)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T. 063-454-3864)

7.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군산시 공고 제2019-3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7-56호(2017.4.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산시 경암동 635-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제94호)사업”이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635-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제94호)사업
  - 나. 명 칭 : 군산경찰서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주차장 조성 2,604.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교통행정과)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기간 : 2017. 4. 28. ~ 2018. 12. 31.
6.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9-25호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안)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8일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계획 : 40호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금액 : 호당 690만원 한도로 한다.
- 대상주택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개발공사 및 시소유 임대주택
-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하며 2018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 ※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기간
  - ◆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
  -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접수 : 2019.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지원방법
  - ◆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 LH공사에 지급
- 신청서류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 ◆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기타, 유의사항
  -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 ◆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문의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m<sup>2</sup>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장애등급 : 급)

## 희망주택 유형

- 장기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희망 평형 : m<sup>2</sup>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 조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인감증명서, 인감도장,신분증
2.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3.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협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	주택 소재지		
	공 급 면 적	m <sup>2</sup> (전용면적	m <sup>2</sup> )
	지 원 금 액	금	원(₩                      원)
	지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협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위 협약인 성 명 :

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군 산 시 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19-34호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9.1.7 ~ 2019.1.21(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군산시청 징수과 수납관리계(☎ 063)454-2500)

2019년 1월 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9-49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9일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서명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223,358명	20,306명	

※ 기 타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총무과 ☎454-2243, FAX 454-22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2018. 12. 31일 기준]

읍면동	19세이상 주민수 (A)	외국인 영주체류자 (B)	선거권이 없는자(C)	주민투표 청구권자총수 (A+B-C)	연서 주민수	비고
계	223,189	418	249	223,358	20,306	
옥구읍	3,148	4	3	3,149		
옥산면	3,622	1	2	3,621		
회현면	3,051	3	2	3,052		
임피면	2,643	1	3	2,641		
서수면	2,547	2	1	2,548		
대야면	4,851	3	7	4,847		
개정면	2,962	0	3	2,959		
성산면	2,827	4	3	2,828		
나포면	2,181	0	1	2,180		
옥도면	3,409	3	3	3,409		
옥서면	3,038	3	4	3,037		
해신동	2,288	13	3	2,298		
월명동	5,550	31	12	5,569		
삼학동	5,642	16	11	5,647		
신흥동	6,609	9	6	6,612		
중앙동	2,884	15	6	2,893		
홍남동	9,569	14	13	9,570		
조촌동	16,360	24	21	16,363		
경암동	6,971	15	13	6,973		
구암동	4,895	7	8	4,894		
개정동	2,648	4	3	2,649		
수송동	41,150	43	29	41,164		
나운1동	11,781	18	16	11,783		
나운2동	19,885	22	22	19,885		
나운3동	26,610	43	24	26,629		
소룡동	14,511	94	14	14,591		
미성동	11,557	26	16	11,567		

군산시 공고 제2019-50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9일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기관명	내국인			영주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경과 외국인수(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비고
	19세 이상 인구수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 보유자(A)			
군산시	223,189	249	222,940	273	223,213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군산시장】

(단위 : 명)

읍면동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외국인수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상 경과자)	주민소환 투표청구 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최소 서명인구수
계	222,940	273	223,213	33,482	
옥구읍	3,145	3	3,148		473
옥산면	3,620	1	3,621		544
회현면	3,049	2	3,051		458
임피면	2,640	0	2,640		396
서수면	2,546	0	2,546		382
대야면	4,844	1	4,845		727
개정면	2,959	0	2,959		444
성산면	2,824	0	2,824		424
나포면	2,180	0	2,180		327
옥도면	3,406	1	3,407		512
옥서면	3,034	2	3,036		456
해신동	2,285	10	2,295		345
월명동	5,538	28	5,566		835
삼학동	5,631	11	5,642		847
신평동	6,603	6	6,609		992
중앙동	2,878	15	2,893		434
홍남동	9,556	6	9,562		1,435
조촌동	16,339	12	16,351		2,233
경암동	6,958	7	6,965		1,045
구암동	4,887	6	4,893		734
개정동	2,645	3	2,648		398
수송동	41,121	29	41,150		2,233
나운1동	11,765	11	11,776		1,767
나운2동	19,863	11	19,874		2,233
나운3동	26,586	31	26,617		2,233
소룡동	14,497	62	14,559		2,184
미성동	11,541	15	11,556		1,734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군산시의회의원】

(단위 : 명)

읍 면 동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외국인수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청구권자 수	청구서명인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서명인구수
가 선거구	소계	16,254	9	16,263	3,253	
	옥구읍	3,145	3	3,148		163
	옥산면	3,620	1	3,621		163
	회현면	3,049	2	3,051		163
	옥도면	3,406	1	3,407		163
	옥서면	3,034	2	3,036		163
나 선거구	소계	28,323	87	28,410	5,682	
	소룡동	14,497	62	14,559		285
	미성동	11,541	15	11,556		285
	해신동	2,285	10	2,295		285
다 선거구	소계	17,993	1	17,994	3,599	
	성산면	2,824	0	2,824		180
	개정면	2,959	0	2,959		180
	나포면	2,180	0	2,180		180
	서수면	2,546	0	2,546		180
	임피면	2,640	0	2,640		180
	대야면	4,844	1	4,845		180
라 선거구	소계	30,829	28	30,857	6,172	
	구암동	4,887	6	4,893		309
	조촌동	16,339	12	16,351		309
	개정동	2,645	3	2,648		309
	경암동	6,958	7	6,965		309
마 선거구	소계	23,603	60	23,663	4,733	
	월명동	5,538	28	5,566		237
	삼학동	5,631	11	5,642		237
	중앙동	2,878	15	2,893		237
	홍남동	9,556	6	9,562		237
바 선거구	소계	41,121	29	41,150	8,230	
	수송동	41,121	29	41,150		-
사 선거구	소계	38,231	28	38,259	7,652	
	신평동	6,603	6	6,609		383
	나운1동	11,765	11	11,776		383
아 선거구	소계	26,586	31	26,617	5,324	
	나운3동	26,586	31	26,617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1호

## ‘19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19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대에 따라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 농업인(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m<sup>2</sup>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다용도 농작업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제품이 해당됩니다.

1. 신청기한 : 2019. 1. 7. ~ 2019. 1. 31

2.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m<sup>2</sup>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2018.1.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농업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가능

-농어촌지역 외 거주자

3.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4.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 신분증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 군 산 시 장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2호

## ‘19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19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급식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중단으로 생산성 저하 및 일손부족 가중을 해결하고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취사시설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지원합니다. 단, 공동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농촌지역 외의 마을, 국비지원사업·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은 제외됩니다.

1. 신청기한 : 2019. 1. 7. ~ 2019. 1. 31
2. 신청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마을단위)
3.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 20명이상 급식 희망하는 마을
4. 지원내용 : 조리원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번기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6.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 군 산 시 장

# 2019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과장 김종필	063-280-2610
		팀장 김선구	063-280-4567
		담당자 장금숙	063-280-4154

## □ 추진배경

- 급식 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중단으로 생산성 저하 및 일손부족 가중
-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 부담 가중
-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 추진방향

-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공동급식 참여 희망인원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 (지원대상)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농번기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 □ 추진근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량(개소)	1,100	140	160	300	500	
사업비	계	3,040,000	336,000	384,000	720,000	1,600,000
	도비	912,000	100,800	115,200	216,000	480,000
	시군비	2,128,000	235,200	268,800	504,000	1,120,000

## □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10개월)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간 2회 정도 분할 운영
- 사업량 : 500개소
- 사업비 : 1,600,000천원(도비 480,000, 시군비 1,120,000)
  -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 부식비는 1회 집행시 1일 기준 4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 지원대상 제외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촌지역 외의 마을 (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
    -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추진체계

### 1. 주관기관별 임무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정, 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대상 선정,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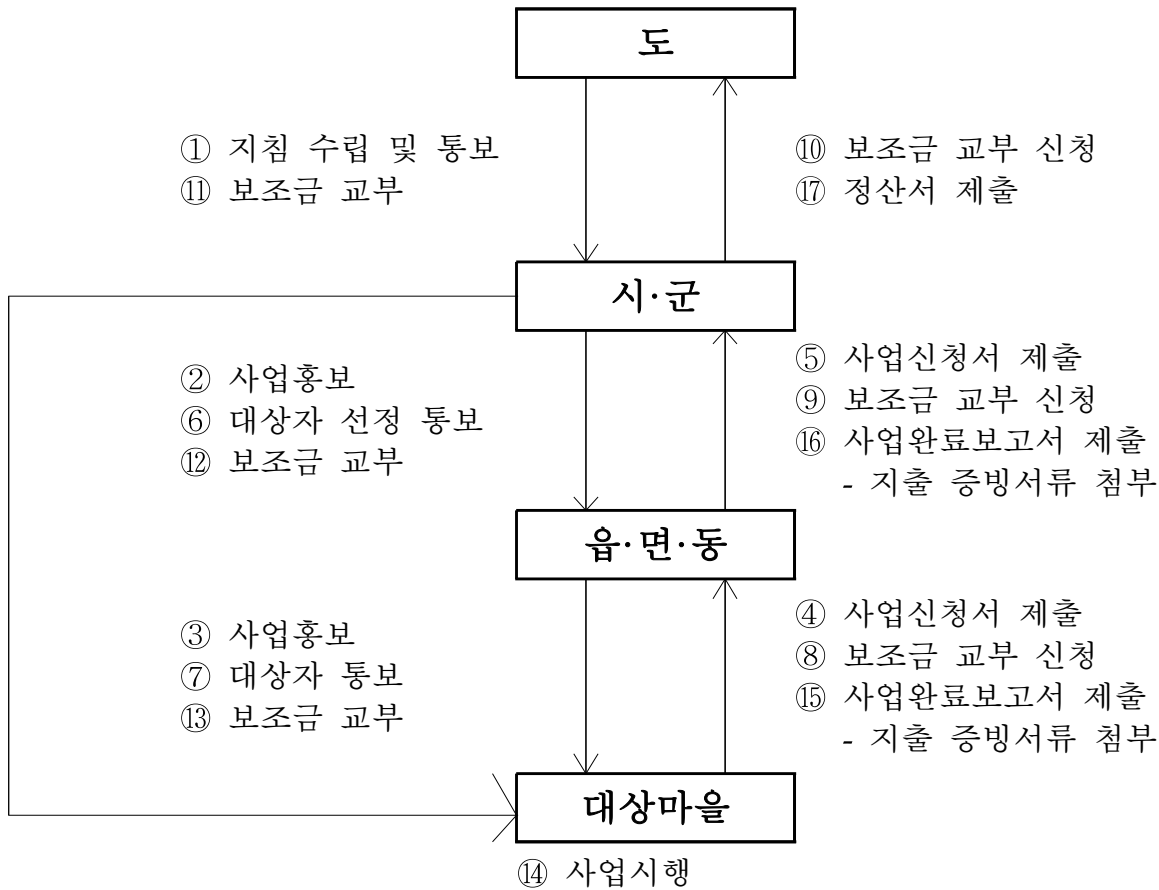
##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축수산물식품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마을공동급식 담당부서

## 3. 사업추진절차

- 사업량 배정 : 도 (2018. 11.)
- 사업지침 통보 : 도 (2019. 1.)
- 사업안내 및 홍보 : 도, 시·군 (2019. 1.~ 2.)
- 사업신청서 접수 : 시·군 [붙임 1, 1-1 서식] (2019. 2. 28.까지)
- 대상마을 선정 : 시군별 사업 배정량 내에서 자체평가 후 농번기 공동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2019. 3. 16.한)
  - \* 급식참여 인원,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비율, 급식 참여인원 중 비농업인 비율, 마을 영농 규모, 사업추진 의지, 급식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 시군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 \* 선정위원회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
- 보조금 교부신청 : 마을→ 시·군→ 도 (2019. 3. 23.) [붙임 2, 2-1 서식]
- 보조금 교부 : 도 → 시·군 → 마을
  - 시·군에서 마을 보조금전용통장에 입금(부식비, 인건비)
  - 부식비 : 체크카드로 집행
  - 인건비 : 조리원 명의 계좌에 이체
  - \* 상·하반기 분할 등 지급 (시·군 실정에 맞게 지급시기 결정)
- 사업시행 : 마을대표 [붙임 3-1 서식 장부 비치]
- 사업완료 보고 : 마을 → 시·군 [붙임 3, 3-1 서식]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완료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시·군 → 도 [붙임 4, 4-1 서식]

### 4. 사업시행 체계도



### 5. 기타 행정사항

- 공동급식사업인 만큼 시장·군수 책임하에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공동급식 장소 수시 위생 지도 점검 : 시·군 위생부서 협조
  - 조리원 급식개시 전 보건증 징구(보건소 발급) 등
- 시·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대상마을 선정
  - 읍·면·동별 2~3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이 없는 읍·면·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 가능
-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임을 표시하여 급식장소 입구에 부착
  - \* 안내문 표준 (안) 별도 송부



[붙임 1]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성 명 :

○ 주 소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공동급식 참여 인원					
	농가(호)	인원	계	시설· 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명 (참여비율%)					

3. 급식계획

○ 급식기간 : 2019. . . ~ . . . ( 일)

- 상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하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80천원 ×○일)

붙임 :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1]

##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마을명 : ]

연번	주 소	성 명	비 고
계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19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
  - 내 용 :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인건비, 급식비 지원
4. 보조금신청액 : 금 0,000,000원(금000만원)
5. 사업 기간 : 2019. 1 ~ 2019. 12
6. 사업계획서 : 별첨
7. 보조금교부 신청조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계획서 1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2-1]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 대 표 자 : ○○시장·군수

### 2. 사업기간 : 2019. . . ~ 2019. . .

- 평균 급식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 3. 세부계획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대표자	조리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업비		
				기간	일수		계	인건비	재료비
합계	개 마을					명	000	00	0

[붙임 3]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결과

### 1. 급식개요

○ 마을명 :

○ 대표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1차 : ~ ( 일) / 주요 농작업 : 마늘수확, 0000

- 2차 : ~ ( 일) / 주요 농작업 : 벼 수확, 000

○ 급식인원 : 연인원 명 (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 천원 (80천원 × 40일)

3. 보조금 청구 계좌 : 인건비( ), 부식비( )

### 4.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

○

붙임 : 1. 농번기 공동급식 일지 ○○부

2.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 .

마을대표 : (인)

○○시장 · 군수 귀하

[붙임 3-1]

## 농번기 공동급식 일지

급식일자 : 2019.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현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붙임 4]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정산결과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급식개소수 :
- 급식인원 : 연인원           명 (매일 급식인원을 합한 누계 인원)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 급식기간중 주요 작목 및 작업내용 : 예)모내기(6월), 벼베기(10월)

### 2. 사업비 집행결과

(단위 : 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기타 자부담 : ○○천원

### 3.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 
- 

붙임 : 농번기 공동급식 실시 결과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 .

○○시장 · 군수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4-1]

## 농번기 공동급식 실시 결과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대표자	조리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업비		
				기간	일수		계	인건비	재료비
합계	개 마을					명	000	00	0

\* 급식인원 : 마을별 급식 대상 인원 (연인원 아님)



[붙임 5]

##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마을선정 평가표(안)

평가 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마을 규모	마을 거주 농가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거주 농가 인구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영농 규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참여도	급식 참여 인원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5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 비율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5	
	급식 참여인원중 비농업인 비율	상 4점, 중 7점, 하 10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여건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종합적 상황등을 고려한 평가자 주관 평가	10	
	급식장소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면적, 위치, 소유 등	10	
	급식시설의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급식인원, 시설내용 등	10	
제외 대상	급식대상 인원	농업인(가족포함) 20인 미만		제외
	공동 취사시설 구비 여부	미 구비		제외
	농촌지역 외 마을 여부	농촌지역 외 마을		제외
	국비, 시군 자체사업 대상 여부	시군 자체사업 대상		제외
가점	2018년 공동급식 미실시 마을			
계		상 10%, 중 80%, 하 10%	100	0

\* 시군 실정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가감 가능

[붙임 6]

## 2019년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량 (마을)	합 계	도비	시군비	비고
합 계	500	1,600,000	480,000	1,120,000	
전주시	11	35,200	10,560	24,640	
군산시	11	35,200	10,560	24,640	
익산시	44	140,800	42,240	98,560	
정읍시	47	150,400	45,120	105,280	
남원시	28	89,600	26,880	62,720	
김제시	31	99,200	29,760	69,440	
완주군	47	150,400	45,120	105,280	
진안군	36	115,200	34,560	80,640	
무주군	39	124,800	37,440	87,360	
장수군	34	108,800	32,640	76,160	
임실군	54	172,800	51,840	120,960	
순창군	34	108,800	32,640	76,160	
고창군	41	131,200	39,360	91,840	
부안군	43	137,600	41,280	96,320	